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요양급여 지급절차 개선〉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053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3
-----------------	---

I. 개요

1.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05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9인
- (2) 제 안 일 : 2025. 6. 24.
- (3) 회 부 일 : 2025. 6.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여성의 임신·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전국 10개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5개, 종합병원 5개)이 지정되어 운영 중임.

그런데 장애여성이 상급종합병원에서 2차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함. 하지만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지는 일반 산부인과 방문이 어려운 장애여성에게 이러한 요양급여의뢰서 발급 절차는 의료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이

용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장애여성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여성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경우, 요양급여 지급절차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889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4(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u><신설></u>	법률 제20889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4(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보건복지부장관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으로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 한정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u> ⑥ <u>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2. 검토의견

□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1)에 근거하여,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 및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 있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을 제공하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참고자료 1: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사업 개요).

현재 전국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총 10개소(상급종합병원 5개소, 종합병원 5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이용 실적은 총 8,666건²⁾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소재지)	비고
1	서울대학교병원(서울 종로구)	상급종합
2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부산 부산진구)	상급종합
3	전남대학교병원(광주 동구)	상급종합
4	울산대학교병원(울산 동구)	상급종합
5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경기 고양시)	상급종합
6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충북 충주시)	종합병원
7	예수병원(전북 전주시)	종합병원
8	차의과대학교 구미차병원(경북 구미시)	종합병원
9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서울 양천구)	종합병원
10	성애병원(서울 영등포구)	종합병원

자료: 보건복지부

-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부인과(진료과목코드: 10)를 대상으로 외래 및 입원 진료 건수를 구분하여 2024년 기준으로 추출한 수치로, 동일인이 중복 이용한 경우도 포함되어 집계된 것임.

□ 그런데 장애친화 산부인과 중 절반이 상급종합병원인 점은 이동에 제약이 있는 여성장애인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에 있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병·의원을 먼저 방문한 뒤,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해야 함.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① 요양급여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하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단계 요양급여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2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2. 분만의 경우
3.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5.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6.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7.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④ 가입자등이 상급종합병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상급종합병원 진료는 가능하나, 이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개정안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으로 이동 제약이 큰 장애여성
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경
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여성의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
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모든 국민이 공통 적용받는 ‘단계적 요양
급여’ 절차는 질환의 중증·응급 여부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
로, 뇌병변장애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추가적
인 예외 인정은 ‘요양기관 종별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정책 기
조 등 고려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관 중 절반이 상급종합병원인 현
재 상황 자체가 접근성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질환의 중증·응급 여부와는 별개로 ‘장애친화 산부인과에서의 진
료’를 단계적 요양급여 절차의 예외로 적용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개정안은 2025년 4월 1일 개정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 예
정인 법률 제20889호⁴⁾를 기준으로 하여 부칙 시행일을 2025년 10
월 2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4) 개정 이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요양급여 지급대상·절차 등에 관한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시행일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여성장애인의 의료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인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이용 시 요양급여의뢰서 제출을 면제하려는 취지는 공감함.
- 다만, 모든 국민이 적용받는 ‘단계적 요양급여’ 절차는 「요양기관 종별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예외는 성별, 장애 여부 등이 아닌 질환의 중증·응급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하고 있어 뇌병변장애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 인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개정안은 요양급여의뢰서 면제에 대한 근거 마련을 규정하고, 요양급여 지급대상·절차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요양급여의 방법·절차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체계의 통일성 측면 등 고려 시, 개별법상 요양급여 절차를 달리 규정하기 위한 별도 근거 조항 마련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나. 관계 단체

단체	의견 주요내용
대한의사협회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자칫 요양급여 절차를 우회해 편법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통로가 될 우려가 있는바, 요양급여 절차의 예외를 정하는 <u>입법 추진에는 신중한 접근 필요</u>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 및 종별 역할에 맞는 전문적 치료 제공을 위해 중증 장애여성으로 한정하는 등 <u>대상자 범위의 구체적 정의 필요</u>
국립중앙의료원	대상자에 시각장애 등 <u>다양한 장애유형을 반영하고,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 외에 의사소통의 중대한 제한 등 1차 진료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까지 포괄</u>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u>대상자 범위 및 종별 범위를 확대하고, 시행령 마련 시 당사자 등 참여를 명시하여 실효성 제고</u> <u>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조항 신설</u> <u>3년마다 산부인과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친화 산부인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u>
한국지체장애인 협회	<u>명확한 기준과 적용 범위에 대한 시행령 함께 마련 필요</u>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찬성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동의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사업 개요>

□ 지정 대상

- 산부인과 및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 인구수 및 생활권역을 고려하여 지정

□ 지원 예산 및 조건(2025년 기준)

- 지원예산 : 시설·장비비 3.5억원 및 운영비 1.4억원
 - * (1차년도) 시설·장비비 350백만원
 - * (2차년도~)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140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의료기관은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
- 지원내용 : 장애친화 산부인과 설치 관련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구분	비고
시설·장비비	○ 장애친화 진료실, 입원실, 분만실, 수유실 등 시설 개보수 또는 증축 및 장애친화 편의장비 등 구매 ○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해에 1회 지급
운영비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선정된 이후 지원 - 1차년도는 최장 1분기 지원 * 단,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개시 이후 지급 가능 * 운영 개시 전,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시 관련 증빙자료 구비 필수

자료: 보건복지부